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10. 14.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57호

제출연월일 : 2021. 10. 14.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우리시 일자리 정책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 대부료 등의 요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및 우리시 일자리 정책에 따라 창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함. (안 제28조제4항제7호, 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10.~ 2021. 9.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세정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8.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영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성명
입안자	회계과장	서승권
	재산관리팀장	서금애
	담당자	고은애 (746-550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6.(생 략) <신 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6.(현행과 같음) 7.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신 설>	8.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영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⑤~⑥ (생 략)	⑤~⑥(현행과 같음)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 해당없음

3. 작성자

회계과장 서 승 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 제1

항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 제1항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 제22호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